
제10회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공모전 추진계획

2022. 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성과확산실

□ 공모전 개요

- (부제) 상상이 현실이 되는 2050 대한민국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주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
- (공모기간) 2022.9.8.(목) ~ 10.5.(수)(28일)

□ 주제 및 제출 양식

- (주제) 국토교통 R&D 아이디어 및 2050 국토교통기술 미래상을 발굴하여 국토교통기술로 이룩하는 현실과 미래 아이디어
 - (기술분야) 국토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R&D 제안
 - * 모빌리티 인프라, 스마트'X', 미래교통수단, 수소경제, 디지털 국토정보 등
 - (창의분야) 2050 상상이 현실이 되는 국토교통기술의 미래
 - * 에세이,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
 - 예시) 2050년 자동차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살고싶은 2050년의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 (제출 양식)

	기술분야	창의분야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아이디어 기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서 3페이지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세이, 영상 등 완성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세이 : 3페이지 이내 - 디자인 : A3 사이즈 - 카드뉴스, 웹툰 : 10컷 이하 (1,000px * 1,000px) - 영상 : 3분이내
멘토링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사항 	-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료(ppt) • 최종 기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서 3페이지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창작물 • 요약서

□ 참가 자격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개인 또는 팀*(대표자 포함 5인 이하 단체)으로 참가 가능하며, 팀의 경우 참가자 전원이 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함
 - * 개인간 형성된 팀을 의미
-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제한됨
 - 신청서 등의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
 - 동일(유사) 아이디어로 타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공모전 일정에 참여 가능한 자
 - * (공통) 2차 심사, 시상식 / (기술분야) 멘토링 워크숍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서류를 누락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해 오기한 자는 심사 제외되며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
-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거 고등학생 이하의 신분은 장관상 수상 불가
- 다작 공모가 가능하나 1명(팀) 당 최우수작 1작만 수상 가능
- 수상작에 한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모 및 심사 세부일정 및 심사내역은 공모전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공모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는 심사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아이디어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특허분쟁이 진행 중인 아이디어
 - 기업 홍보 등 사익을 위한 자료
 - 공모전 주제에 벗어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을 제출한 자
- * 사후 제외 기준에 해당됨이 확인될 경우, 자격 박탈 및 상금 환수 등 조치

- 순수 창작 저작물이어야 하며 타 공모전 수상작, 표절, 도용, 복사 등의 경우 심사제외 및 수상취소와 시상내역을 환수함
 - *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
- 출품된 작품은 사진, 이미지, 음원, 영상, 폰트 등의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원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 이용 허가를 받은 후 활용해야 함
- 제작에 사용된 음원, 이미지, 폰트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무료 저작물로 사용을 권장함
 - * 음악 저작권 관련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문의
- 이외 법규(초상권, 명예훼손, 저작권 등)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 또는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5년 동안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음
- 수상작은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과 오프라인(전시, 홍보책자, 팜플릿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락을 받아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 * 홈페이지, 최종 결과물 보고자료(보고서 및 창작물) 등
- 수상작은 국토교통기술 홍보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기술 대전에서 전시
- 선행기술 검토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는 상금 수령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에 응해야함
- 공모작품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심사에서 60점 이상인 작품에 대하여 멘토링 워크숍 기회 제공
 - 입상 최소점 : 대상(90점 이상), 최우수상(80점 이상), 우수상(70점 이상), 특별상(60점 이상)
- 멘토링 워크숍 미참여 공모자(팀)는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추진 일정

공고 및 접수 (9.8.~10.5.)	1차 심사 (10.7.~13.)	멘토링 워크숍 (10.19.)	2차 심사 (10.27.~28.)	시상식 (11.10.~11.)
• 공모전 공고 • 작품 접수	• 워크숍 및 2차 심사 대상자 선정	• 국토교통 강연 • 1:1 멘토링	• 수상작 선정	• 인기투표 • 시상식 진행

* 세부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 계획

○ 총 14건 선정 및 시상(2,800만원)

- 인기상은 국토교통기술대전 관람객 투표를 통해 선정

【 시상 계획(안)* 】

구 분	기술분야		창의분야		포상 종류
	개수	상금	개수	상금	
대상	1	500만원	1	5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1	300만원	1	300만원	진 흥원장상
특별상	4	150만원	4	150만원	후원기관상
인기상	1	-	1	-	부상

* 수상자가 상금 수여시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수상자 자체 부담)

1. 접수 및 적격성 검토

- (접수기간) '22.9.21.(수) ~ 10.5.(수) 16:00
- (제출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국토교통기술.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차 제출서류
 - (기술분야) 기술아이디어 기획(안), 참가 신청서, 동의서
 - (창의분야) 에세이, 영상 등 완성작품, 참가 신청서, 동의서
- (적격성 검토) 서류미비, 허위 정보 기재 등 유의사항 준수 여부 검토

2. 1차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 기간) '22.10.7.(금) ~ 13.(목)
- 1차 심사
 - (심사항목)

항목		내용	배점
기술 분야	실현가능성	제안 아이디어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25점
	파급효과	아이디어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25점
	독창성	기존 기술과 차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25점
	완성도	아이디어가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가	25점
창의 분야	주제적합성	주제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였는가	25점
	내용전달력	주제의식이 명료하고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가	25점
	창의성	2050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가	25점
	작품성	완성도가 높으며 흥미를 유발하는가?	25점

- (선정기준) 접수 산정결과 60점 이상인 작품 중 고득점 순으로 3 배수 이내를 멘토링 워크숍·2차심사 대상작으로 선정
- (결과발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발표

* 발표일 : '22.10.14. 예정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멘토링 워크숍

- (목적) 기술아이디어 디벨롭 및 발표자료 제작을 위하여 공모자 대상 전문가 멘토링 제공
- (기간/장소) ~ 10.19.(수) / 추후 합격자 개별 통지
- (내용)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선택 진행
 - 아이디어 디벨롭 관련 전문 강의 제공
 - 기술별로 그룹핑하여 전문가 매칭(5개 그룹 내외) 및 멘토링
- 멘토링 워크숍 종료 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참석 여부 확인

4. 2차 접수 및 심사

- (접수기간) 10.19.(수) ~ 10.25.(화), 7일
- (접수물)
 - (기술분야) 발표자료(ppt), 최종 기획서
 - (창의분야) 최종 창작물, 요약서
- 2차 심사 세부내용
 - (기간) 10.27.(목) ~ 28.(금)
 - (방법) 참가자 발표를 통한 대면 심사
 - (심사기준) 1차 심사와 동일

항목		내용	배점
기술 분야	실현가능성	제안 아이디어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25점
	파급효과	아이디어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25점
	독창성	기존 기술과 차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25점
	완성도	아이디어가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가	25점
창의 분야	주제적합성	주제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였는가	25점
	내용전달력	주제의식이 명료하고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가	25점
	창의성	2050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가	25점
	작품성	완성도가 높으며 흥미를 유발하는가?	25점

- (입상작 별 최소점 선정) 일정 기준(최소점)을 달성한 공모작을 수상작으로 선정, 해당구간이 없을 경우 해당 수상작 없음으로 처리
 - * 대상(90점 이상), 최우수상(80점 이상), 우수상(70점 이상), 특별상(60점 이상)
- (선행기술검토) 표절, 도용 등 선행기술과 제안내용간의 유사성 검토를 통해 표절작은 수상 후보작에서 제외

5. 결과 발표

- (선정결과 발표) 10.31.(월)
 - 진흥원 및 국토교통기술 대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 분야별 수상작 6건 발표(인기상 제외)
- (인기상 선정) 국토교통 기술대전 기간시 수상작 전시 후 관람객 투표를 통해 선정

6. 시상식

- 국토교통 기술대전 행사 내 시상식 개최
 - 상세일정 및 장소는 수상자 개별 통보

7. 후속조치

- (홍보) 진흥원 및 후원기관 홈페이지·SNS를 통한 수상작 게시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모전 운영담당자, 아이디어 심사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4.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대한민국 국민(개인 및 대표자 포함 5인 이하 단체)를 의미하며, 참가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참가 제한 기준>

- 동일(유사) 아이디어로 타 공모전에 수상 경험이 있는 자
- 신청서 등의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특허분쟁이 진행 중인 아이디어
- 타인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응모자가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함에 있어 응모된 아이디어(이하 ‘초기 아이디어’라 함)를 개선 발전시킨 아이디어(이하 ‘최종 아이디어’라 함)와 관련 하여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아이디어 개선 발전의 수행] ① 응모자는 주관기관과 함께 초기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 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

②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초기 아이디어의 개선 발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이디어의 귀속] ①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②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모전 주관기관의 원조를 받아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개량적 효과를 가져 초기 아이디어에서 실질적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공동 소유 혹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모전 주관기관의 원조를 받아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개량적 효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제5조 [응모자의 의무] ① 응모자는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응모자는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응모자는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주관기관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6조 [쌍방의 의무] ① 주관기관은 초기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응모자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응모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1.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
3. 아이디어 공개일로부터 1년이 초과한 경우 응모자 역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주장 불가

②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가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공동 소유이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타방을 누락하고 그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제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용도 제한] 주관기관은 응모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공모전 운영, 연구기획, 국토교통기술 홍보의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시 응모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주관기관은 응모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이디어 심사 및 선정 등 안내문에 공지된 사항
2. 제7조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 응모자는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주관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폐기한다.

② 응모자는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2항에서 반환될 자료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도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응모자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응모자가 수상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갖고 주관기관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응모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응모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11조 [사용권 허락] 주관기관이 그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응모자와 별도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양도] 주관기관은 응모자가 단독 보유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또는 응모자의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 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응모자와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주최측과 응모자 사이에 하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양측이 합의하여 선정된 기관이 평가한 가치를 합리적인 대가로 정한다.

제13조 [공유시 사용과 이익 배분] 응모자와 주관기관이 공유하는 최종 아이디어를 응모자 또는 주관기관의 일방이 사용하려는 경우 타방과 협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이익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다만, 최종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의 성격이 타방 동의 없이 사용가능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개별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15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